부산광역시체육회
위임전결 규정

● 부산광역시체육회 위임전결 규정

제정 2016년 06월 15일
전부개정 2017년 07월 24일
개정 2018년 12월 10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(이하"체육회"라 한다) '사무처 운영규정' 제70조제2항 및 제95조에 의거 체육회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철저한 이행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① 체육회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다른 별도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②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결재는 별표 제1호의 구분에 의한다.

제3조(전결, 대결, 후결) ① 회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.

② 결재권자가 출장, 휴가,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전결사항의 특례)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1.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
2. 그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일 경우
3.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책임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.

제6조(합의사항) 중요한 사항으로서 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의 협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처리사항의 보고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요지를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(2017.07.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12.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 <개정 2018.12.10.>

○ 사무전결 현황

소 관 별	단 위 업무수	세 부 업무수	전 결 구 분			
			부 장	본부장	사무처장	회 장
기획총무부	25	111	30	17	50	14
공정체육부	11	22	0	1	21	0
경기운영부	12	37	6	10	19	2
학교스포츠클럽부	11	35	6	12	17	0
회원종목지원부	9	36	6	8	21	1
지역체육진흥부	8	30	7	7	16	0
계	76	271	55	55	144	17

[별표 제2호] <개정 2018.12.10.>

사 무 전 결 처 리 사 항

가. 기획총무부 소관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1	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·평가	①기본계획 수립				○
		②세부추진계획 수립			○	
		③계획의 시행		○		
		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		○	
2	부산체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	①기본계획 수립				○
		②세부추진계획 수립			○	
		③기본제도개선 사항				○
		④세부제도개선 사항			○	
		⑤제도개선 실시 및 평가			○	
3	사무분장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	①기구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				○
		②사무분장에 관한 사항			○	
		③업무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		○		
4	예산편성,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	①세입세출예산안 편성				○
		②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수립			○	
		③예산의 변경			○	
		④예산의 조정 및 통제			○	
		⑤예산의 집행			○	
		⑥급여 등 법령·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등		○		
		⑦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공사, 용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, 수리 또는 제조 등		○		
		⑧결산서 작성 및 정산보고			○	
		⑨보조금교부 요청		○		
5	각종 수익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사항	①기본계획 수립			○	
		②세부추진계획 수립			○	
		③계획의 시행		○		
		④사후관리	○			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6	조직운영에 관한 사항	①업무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			○	
		②각종 지시사항의 종합 및 이행 실태			○	
		③각종 제안제도의 운영			○	
7	감사 및 보안에 관한 사항	①타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			○	
		②자체 감사업무				
		- 기본계획 수립			○	
		- 계획의 시행			○	
		③비밀문건의 취급 및 관리	○			
8	회의 및 특별행사에 관한 사항	①대의원 총회				
		- 기본계획 수립				○
		- 계획의 시행			○	
		②이사회				
		- 기본계획 수립				○
		- 계획의 시행			○	
		③운영·재정·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				
		- 기본계획 수립			○	
		- 계획의 시행		○		
		④유공자 시상식				
		- 기본계획 수립			○	
		- 계획의 시행	○			
9	직원인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	①임원의 취임				○
		②직원의 채용				○
		③직원의 승진 및 전보				
		- 본부장(4급) 이상				○
		- 부장(5급) 이하			○	
		④직원의 승급				
		- 특별승급			○	
		- 정기승급			○	
		⑤인사기록 관리	○			
		⑥직원의 상벌				
		- 중요사항			○	
		- 경미사항		○		
		⑦직원의 휴가계획 수립, 시행		○		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		⑧직원의 근태 관리				
		- 본부장 이상			○	
		- 부장		○		
		- 과장 이하	○			
		※ 결재권자는 부서별 소속 상급자 임				
		⑨직원연수에 관한 사항		○		
		⑩기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	○			
10	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	①급여 조정			○	
		②급여 및 퇴직금 지급			○	
		③퇴직급여충당기금의 운용 관리			○	
11	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	①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리	○			
		②재해보상 관리		○		
		③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		○		
12	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	①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			○	
		②재산의 총괄 관리			○	
		③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관리	○			
		④차량관리 및 운영	○			
13	자금관리에 관한 사항	①자금 수입			○	
		②자금 운용			○	
		③자금현황 보고		○		
		④자금차입 및 상환 결정				○
14	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	①체육진흥기금				
		- 조성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				○
		- 관리 운영			○	
		②선수상해보상기금				
		- 조성계획 수립			○	
		- 관리 운영			○	
15	세무업무에 관한 사항	①각종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	○			
		②기타 세무	○			
16	유가증권에 관한 사항	①유가증권의 관리			○	
17	체육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	①운영 계획			○	
		②사업 관리	○			
		③근무자 복무 및 시설 관리	○			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18	차량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	①운행계획 ②운행관리 ③운전원 복무관리	○ ○ ○			
19	일반서무에 관한 사항	①제 증명서 발급 ②문서의 통제, 분류, 관리 ③사무용품의 수발 ④통신시설의 운용 ⑤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 ⑥문서의 수발, 보존 ⑦업무 인계인수서 관리	○ ○ ○ ○ ○ ○ ○			
20	국민체육센터, 부산종합테니스장 등 각종 위·수탁 관련 사항	①위·수탁 여부(신규, 종료) ②기본계획 수립 ③세부추진계획 수립 ④계획의 시행 ⑤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 ○ ○	○
21	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등 신규 사업 개발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	 ○ ○	○
22	시지원 및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23	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	①기본 구축 및 리뉴얼에 관한 사항 ②자료 구축 및 관리 전반	 ○	 	○ 	
24	언론보도 및 각종 간행물 발간	①언론보도, 신규·정기 발간 기본 계획 ②계획의 시행 ③자료수집 및 보관, 배포	 ○ ○	 	○ 	
25	체육진흥 세미나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
나. 공정체육부 소관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1	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			○ ○	
2	회원종목단체 및 구·군체육회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의 수립 ②계획의 시행			○ ○	
3	회원단체 상시감사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의 수립 ②계획의 시행			○ ○	
4	각종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의 수립 ②계획의 시행			○ ○	
5	체육회 소송에 관한 사항	①소송처리 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			○ ○	
6	체육회 각종 규정 제·개정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	①각종 규정의 제·개정 심의 사항 보고			○	
7	회원종목단체 및 구·군체육회 임원에 대한 연임 심의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의 수립 ②계획의 시행			○ ○	
8	유관기관 및 자문변호사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	①유관기관 및 자문변호사 유권해석 요청 ②회원단체 유관기관 유권해석 처리			○ ○	
9	스포츠인권향상사업에 관한 사항	①스포츠인권향상사업 - 기본계획 수립 - 인권향상사업 교육 시행 - 결과보고 및 정산 ②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민원처리		 ○	 ○ ○ ○	
10	회원종목단체 및 구·군체육회 규약(규정) 승인	①규약(규정)승인			○	
11	각종 법령 시행에 관한 업무	①법령 검토 및 시행 ②회원단체 안내 등 통상적 업무			○ ○	

다. 경기운영부 소관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1	회의에 관한 사항	①경기력향상위원회 - 기본계획 수립 - 계획의 시행		 ○	 ○ 	
2	전국하계체전 성적향상 전략 분석 및 수립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	 ○ ○ 	○ ○	
3	전국하계체전 참가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③결과보고 ④대표선수단 결단식, 해단식 및 유공자 포상		 ○ 	○ ○ ○	
4	경기용기구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용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		 ○	○ 	
5	실업팀 창단 조정·자문	①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②창단 기업 및 종목 선정			○ 	 ○
6	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 관리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- 입단대상자 심사, 분석 - 육성지원 - 사후관리	 ○ 	 	○ ○ ○	
7	전국하계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 수립			 ○ ○ ○	○
8	선수 장학금 · 훈련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대상자 심사, 선정 ③사후관리, 평가, 분석		 ○	○ ○ 	
9	경기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	①각종 국내외 경기기록의 정리, 보존, 통계 ②자료의 열람 ③자료의 배포	 ○ ○	○ 	 	
10	전문 체육정보자료의 수집 및 평가·분석	①기본계획 수립 ②도서 및 자료 수집 ③제반 체육관련자료의 통계 및 자료화 ④자료 배포	 ○ ○ ○	 	○ 	
11	강화훈련 및 전지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훈련격려계획 수립 및 시행 ④훈련비 지원 및 정산		 ○ ○ 	○ ○	
12	선수등록에 관한 사항	①선수등록 및 자료 관리		○		

라. 학교스포츠클럽부 소관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1	회의에 관한 사항	①학교체육위원회,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- 기본계획 수립 - 계획의 시행		 ○	 ○ 	
2	전국소년체전에 관한 사항	①대회참가 - 기본계획 수립 - 세부추진계획 수립 - 결과보고 및 분석	 ○	 ○ 	 ○ 	
3	기초종목 챌린지대회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사후관리, 평가, 분석	 ○ 	 ○ 	○ ○	
4	꿈나무선수 육성관리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사후관리, 평가, 분석	 	 ○ ○ 	○ ○	
5	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③육성지원	 ○ ○	 	○ 	
6	글로벌스타 및 체육장학생 업무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③각종 장학생 추천(대한체육회 등)	 	 ○ ○	○ 	
7	정책종목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③육성지원	 ○	 ○ 	○ 	
8	전문체육지도자 관리에 관한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대상자 심사, 선정 ③복무관리 및 점검	 	 ○	○ ○ 	
9	거점·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10	체육시설 및 훈련장 관리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체육시설 및 전용훈련장 관리에 관한 사항	 	 ○	○ 	
11	전국동계체전 참가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③결과보고 ④대표선수단 결단식, 해단식 및 유공자 포상	 	 ○ 	○ ○ ○	

마. 회원종목지원부 소관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1	회의에 관한 사항	①스포츠교류위원회 - 기본계획 수립 - 계획의 시행		 ○	 ○ 	
2	회원종목단체 육성지원	①사업계획의 수립 ②사업계획의 시행 ③가입·탈퇴에 관한 사항 ④대의원총회 ⑤기타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사항	 ○	 	○ ○ ○ 	 ○
3	국제경기대회 관련 업무	①국제스포츠교류 업무 - 기본계획 수립 - 세부계획 추진 및 실행 ②경기단체의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③후쿠오카 교류대회 - 기본계획 수립 - 세부계획 추진 및 실행			 ○ ○ ○ ○ ○	
4	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학종합축제한마당 등 市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5	회원단체(구·군, 종목)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		 ○	○ 	
6	시지원 및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7	부산광역시장배슈퍼컵 대항전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8	부산씨름왕 및 대통령배 씨름왕대회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9	시장기/장관기 게이트볼 대회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 	 ○ 	○ ○	

바. 지역체육진흥부 소관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전결구분			회장 결재
			부장	본부장	처장	
1	회의에 관한 사항	①생활,여성체육위원회 - 기본계획 수립 - 계획의 시행		 ○	 ○	
2	구·군체육회 관리에 관한 사항	①회장선거에 관한 사항 ②구군체육회 이사회 및 총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③회원단체 결성 지원 및 확대 육성 방안 ④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⑤각종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⑥기타 구군체육회에 관한 사항	 ○	 ○	○ ○ ○ ○	
3	구·군체육회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	 ○	○ ○	
4	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및 지도자 관리 운영 ③기타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사항	 ○	 ○	○	
5	생애주기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	 ○	○ ○	
6	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	 ○	○ ○	
7	시민체육대회 및 체육행사	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	 ○	○ ○	
8	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③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 ○		○ ○	